

## 14. '98세법 개정(안)에 대한 문답자료

자료제공 : 재정경제부

### 1. 국제기준에 따라 경비처리기준을 재정비하고 증빙요건을 강화한다는 데 그 내용은?

- 현재는 손비로 인정되는 경비의 일반원칙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
  - 인건비·복리후생비·여비·해외시찰비·광고선전비·접대비 등 각종 경비의 요건 및 손비인정범위 등이 법령·통칙 등에 걸쳐 방만하게 규정되어 있음
- 따라서, 미국등 선진외국에서와 같이
  - 경비는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지출되도록 경비의 일반원칙을 규정하고
  - 개별 경비의 범위를 명확화하여 업무와 무관한 부당한 비용의 손비처리를 방지하고 회계 및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음
- \* 개별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 및 규칙에서 규정
- 또한, 현재 법인의 경비지출증빙은 특별한 제약이 없으나
  - 앞으로는 세금계산서, 신용카드매출전표, 계산서와 같이 거래 상대방의 확인이 가능한 증빙만 인정하고
    -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지 않는 영수증은 소액거래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
    -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거래상대방의 과표양성화를 도모하도록 하였음
  - 다만, 이 경우 지출증빙이 없는 비용이 손비부인되는 것은 아니며
    - 증빙불비금액의 10%가 가산세로 부과됨

2. 이번 조치에 따라 경비지출증빙으로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영수증의 구체적 범위는? 그리고 그 불이익의 내용은 무엇인가?

- 경비지출증빙으로 사용되는 경우 불이익을 받는 영수증의 범위
  - 영수증(구 간이세금계산서)
  - 금전등록기 영수증
  - 기타 각종 영수증(승차권등)
- ※ 단, 다음의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함
  - ①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
  - ② 거래상대방이 읍·면 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·과세특례자로서 신용카드가맹을 하지 아니한 경우
- 불이익의 내용
  - 5만원 이상 접대비지출의 경우 : 필요경비(소비)로 인정되지 않음
  - 10만원 이상 경비지출의 경우(접대비 제외) : 필요경비(손비)로는 인정되나 「증빙불비가산세」가 부과됨
- ※ 증빙불비가산세 : 법령상 인정되지 않는 증빙수취금액×10%

3. 기밀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, 접대비의 신용카드사용의무를 강화한다는 데 그 내용은?

- 지난해 접대비제도를 개선하면서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손비인정한도를 대폭 축소한 바 있음
  - 기초금액 : 1,200만원(중소기업 1,800만원)
  - 수입금액 기준

	'98년	'99년	2000년
100억	0.3%	좌동	0.2%
500억	0.2%	0.15%	0.1%
500억 초과	0.06%	0.04%	0.03%

- 이번 개정에서는 먼저, 접대비중 지출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접대비로 인정되는 기밀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였는바
  - 99년에는 현행 한도액(접대비의 20%)의 1/2 수준인 접대비 한도액의 10%로 줄이고
  - 2000년부터는 완전 폐지하여 접대비는 모두 지출증빙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접대비로 인정되도록 하였음
- 한편, 접대비는 기업의 본점 소재지 또는 지출지역에 따라 50%(군지역)~80%(서울시)까지 신용카드(세금계산서)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바
  - 앞으로는 5만원이상 접대비는 신용카드(세금계산서)로 사용한 경우에만 손비로 인정하도록 요건을 강화하였음
- \*99년에는 기밀비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됨
- 이와함께 2000년전부터 금융기관에 대하여만 접대비의외에 추가로 손비인상되는 모집권유비를 폐지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였음

4. 기업이 보유하는 회원권·승용차의 손비인정을 제한하고, 종업원에 대한 저리자금대출을 억제한다는 데 그 내용은?

-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중 비업무용 자산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규제제도를 두고 있음
  - 예)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시 차입금이자 및 유지비 손비부인등
- 다만, 헬스클럽 회원등 개인 사용이 전속되는 회원권은
  - 출자임원이 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제한이 없으나
  - 앞으로는 모두 업무무관자산으로 분류하여 당해 회원권가액 상당 차입금이자 및 유지비를 손비부인하도록 하였음
- 승용차의 경우에도 기업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
  - 실제 임직원등이 사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
  - 일반 유지비는 종전대로 손비인정하되,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감가상각비에 한하여 80%만 인정하도록 하였는 바
    - 이 경우에도 추우 당해 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등에는 그간 손비로 인정되지 않았던

감가상각비 부분이 손비로 인정됨

- 기업이 종업원에게 무상·저리로 주택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현재 2,000만원까지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
  - 기업들이 자금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상황을 감안할 때 이와같은 제도가 경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고
  - 금융기관등 일부 업종의 기업들만 혜택을 보고 있어 앞으로는 정상 이자율과의 차액상 당액은 익금으로 과세하도록 한 것임
  - 다만 이경우에도 기존 융자금에 대해서는 3년간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였음

5.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데 그 내용은?

- 현재 기업이 주주나 계열사등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면서
  -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등 그 거래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음
- 그러나, 현행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주로 형식적인 지배관계를 기준으로 되어 있음
  - 1% 이상 출자자
  - 임원·사용인등
  - 출자자등이 30% 이상 출자한 법인 및 그 법인이 50% 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등
- 따라서, 직접 당해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으면서 간접출자에 의해 지배하는 경우 등에는
  - 현행 기준상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어 부당내부거래를 억제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
- 이와같은 점을 감안하여 이번 개정안에서는
  - 기업집단의 계열법인 및 사실상 지배자와 그 친족이 특수관계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
  - 이번 상법개정에서 공식 이사가 아니면서도 실질적으로 당해 기업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

사하는 명예회장, 기획조정실장등에 대해 사실상의 이사로 보는 제도가 도입되었는 바

- 이들도 모두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추가하여 변칙·부당내부거래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하였음

## 6. 무상주 분배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제도가 바뀐다는 데 그 내용은?

- 기업이 잉여금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방법으로는
  - 사업등 손익거래를 통하여 발생한 이익 잉여금을 현금 또는 주식으로 배당하는 방법과
  - 주식발행초과금등 자본거래를 통하여 발생한 자본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무상주를 배당하는 방법이 있음
- 현재 이익 잉여금을 재원으로 현금배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배당으로 과세되고
  - 주식으로 배당하는 경우에도
  - 그 재원이 현금배당과 동일하게 법인세 과세대상인 손익거래를 통하여 조성된 이익잉여금이라는 점에서 배당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음
- 그러나, 자본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무상주를 분배하는 경우에는 현재 과세하지 않고 있으나
  - 그 재원이 되는 자본잉여금중 주식발행초과금이나 감자차익등 순수 자본잉여금의 경우를 제외하고
  - 자산 수증익, 자기주식 처분이익, 재평가적립금(1% 과세분)과 같은 금액은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지만 세법상으로는 이익잉여금과 같이 손익거래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으므로
  - 이와같은 금액을 재원으로 주주에게 무상주를 분배하는 경우에는 이익잉여금과 동일하게 배당으로 과세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는 점에서 이를 추가하게 된 것임
- 이와함께 합병·분할의 경우 잉여금의 자본전입시기에 따라 과세상 차등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하였음

7. 불성실 신고기업에 대한 각종 가산세가 강화된다는데 그 내용은?

- 현재 법인에 대한 대표적인 가산세로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제도가 있는 바
  - 앞으로는 고액을 신고누락하거나, 분식회계등을 통한 부당한 과표누락에 대해서는 경중을 따져 중과하기로 하였음
- 먼저, 무신고가산세의 경우
  - 현재 산출세액의 20%를 부과하고 있으나
  - 무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%로 인상하였음
- 과소신고가산세의 경우에는
  - 현재 그 내역에 관계없이 산출세액의 10%를 부과하고 있으나
  - 앞으로는 단순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10%로 하되
    - 분식회계등을 통해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경우 그 금액은 20%로 인상하고
    - 특히, 소득의 1/3이상을 누락하고,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에 대하여 30%를 부과하도록 하였음
- 무납부가산세의 경우
  - 납부기한을 1일이라도 경과하면 무조건 10%를 부과하는 제도는 폐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되
  - 미납부기간에 따라 부과하는 가산세율은 현행 1일 0.04%(14.6%)에서 1일 0.05%(연 18.2%)로 인상하여
    - 가산세율이 시중금리보다 낮아 납부를 회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음

8.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벤처기업의 범위는?

-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「벤처기업」은 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벤처기업임
- 좀더 상세히 설명하면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임

-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자총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20이상이거나 주식인수총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인 기업
- 당해기업의 직전사업연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100분의 5이상인 기업
- 다음의 권리 또는 기술을 주된 부분으로 하여 사업화하는 기업
  - 특허권 · 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
  - 특허등록출원 ·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출원중인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
- 공업발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기반기술발전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하거나 신기술의 사용 또는 지식을 집약하는 사업등을 영위하는 기업

9.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이유, 예상되는 문제점 및 보완대책은?

- 기업구조조정의 본격적인 추진 및 기업의 대량 부도사태등으로 중고설비의 공급물량이 크게 증가한 반면
  - 경기 불확실성 등에 따른 기업의 투자기피, 중고설비 유통시장의 미발달 및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배제등으로 인하여 중고설비에 대한 수요가 미미한 실정임
- 이번 개정안에서 제조업의 중고설비투자까지 투자세액공제(3%, '99년말까지 취득분에 한정)를 허용한 것은
  - 중고설비의 사장 · 폐품화를 방지하고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임
- 다만,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함에 있어서 동일 자산에 대한 중복공제의 가능성이 있어
  - 3년내 재판매시에는 감면세액을 추정하는등 악용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음

10. POS 시스템 구입시의 세제지원 내용은?

- 현재에도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시 · 도지사가 지정한 체인 사업자 및 대규모점포 등

록자가

- '98. 12까지 POS시스템(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: Point of Sales)을 구입할 경우
  - POS시스템 구입금액의 5%를 법인세·소득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있음
  - \*체인사업자 : 동일업종의 다수의 소매점포를 운영
  - 대규모 점포 : 동일 건물 안에 설치된 다수의 점포의 집단
- 이번 개정안에서는 POS 시스템 도입을 통한 과표양성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
  - 적용기한 연장을 2000년말까지 연장하고
  - 대상범위에 중소기업자를 추가하였으며
  - 투자세액공제율도 5%에서 10%로 인상하였음

#### 11. 고부가가치서비스 산업에 대한 조세지원강화 내용은?

- 현재도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, 물류산업, 부가통신업, 연구 및 개발업, 방송업, 엔지니어링사업과 같이 부가가치 창출 및 고용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에 대하여는
  -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허용하는 등 제조업에 준한 조세지원을 해주고 있음
- 다만, 유사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세수감소효과등을 고려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분야에 대하여도 고부가가치산업육성 차원에서 감면이 허용되도록 감면대상과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임
  - 추가업종대상 : 영화제작업, 라디오방송업, 텔레비전방송업, 뉴수제공업, 포장 및 충전업, 그래픽 디자인업
  - 지원 범위 : 기술개발준비금 설정 및 기술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허용
  - \*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사항임

#### 12. 위탁생산방식에 의한 반도체 업체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은?

- 현행 세법상의 업종분류는 세법에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한국 표준산업분류의 기준에 따



르고 있으므로

- 위탁생산업체가 제조업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에 규정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
  - 「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(국내기업에 한함)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으로 제조하고,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자기의 고유상표로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사업일 것」
- 따라서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「설계도면이나 소프트웨어를 제공」하여 위탁생산하는 주문형 반도체 업체는
  -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「자기소유의 원재료를 제공」하여 위탁생산하는 업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
    - 중소기업에게 적용되는 특별세액감면제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
-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
  - 원재료를 제공하여 위탁생산한 경우 뿐만 아니라 설계도면이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여 위탁생산한 것도 실질적인 제품생산으로 인정하여
    - 위탁생산에 의한 주문형 반도체 업체의 조세감면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음

**13.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한시적인 소득세·부가가치세 감면제도의 도입취지와 성실신고자의 기준은?**

- 영세사업자들은 과거 불성실신고에 대한 조사나 성실신고시 급격한 세부담증가를 우려하여 실제 매출액대로 신고하기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음을 감안하여
  - 이들 사업자들이 실제 매출액을 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 급격하게 늘어나는 세부담을 완화하여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.
- 성실신고의 기준은 영세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수준, 업종별 과세표준 신장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할 예정임
  - 다만, 동 제도는 실제에 가까운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예외적인 지원제도이므로
  - 이번에 소득세법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간편장부등 최소한의 기장은 유지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할 예정임

14. 성실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경감제도 예시

<현 황>

◦ 업 종 : 음식·숙박업  
 ◦ 수입금액 및 산출세액 신고현황

	98 귀속	99 귀속	2000귀속	2001 귀속
수입금액	5천만원	8천만원	1억원	1억2천만원
산출금액	2백만원	5백만원	7백만원	1천만원

◦ 경감기준율 : 국세청장이 전기대비 40%로 확정 고시  
 ◦ 매년 업종별 수입금액 증가율 : 10%

<경감제도 적용여부 판정 및 세액 계산>

□ 1999년 귀속분

◦ 경감여부 판정 :

신고금액(8천만원)이 경감기준율 반영금액(7천만원=5천만원×140%)을 초과하므로 경감 대상으로 판정

◦ 경감대상 수입금액

8,000만원(신고금액) - 5,000만원×110% =2,500만원

◦ 경감세액 = 500만원  $\times \frac{2,500\text{만원}}{8,000\text{만원}} \times 100\% = 1,562,500\text{원}$

□ 2,000년 귀속분

◦ 경감여부 판정 :

신고금액(1억원)이 기준년도 수입금액 신고금액(8천만원)과 업종별 수입금액 증가율을 반영한 금액(8,800만원)중 작은 금액보다 크므로 세액경감 계속 적용

(\*업종별 수입금액 증가율을 반영한 금액 : 8천만원×110% = 8,800만원)

- 경감대상 수입금액 : 2,500만원(1999년 귀속분과 동일)
- 경감세액 :  $700\text{만원} \times \frac{2,500\text{만원}}{10,000\text{만원}} \times 50\% = 875,000\text{원}$

□ 2,001년 귀속분

- 경감여부 판정 :  
신고금액(1억2천만원)이 기준년도 수입금액 신고금액(8천만원)과 업종별 수입금액 증가율을 반영한 금액(9,680만원)중 작은 금액보다 크므로 세액경감 계속 적용  
(\*업종별 수입금액 증가율을 반영한 금액 :  $8\text{천만원} \times 110\% \times 110\% = 9,680\text{만원}$ )
- 경감대상 수입금액 : 2,500만원(1999년 귀속분과 동일)
- 경감세액 :  $1,000\text{만원} \times \frac{2,500\text{만원}}{12,000\text{만원}} \times 20\% = 416,667\text{원}$

15.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 부가가치세 감면방법이나 추가적인 혜택은?

-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
  - 직전기 과세표준에 업종별성장을 등을 감안한 금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매출액에 대해서는 그 첫해에는 동 매출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전액 면제하는 등 3년간에 걸쳐 감면하도록 할 예정이며
  - 이들 사업자에 대해서는 성실신고 과세기간 및 그 이전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자료상조사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임
- 다만, 동 제도는 극히 예외적인 세금감면제도인 점을 감안할 때 감면기간중 지속적인 성실신고가 담보되는 것이 필요하므로
  - 전기 신고금액(업종별 성장률이 전기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비율을 고려한 금액)보다 하회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부터는 경감을 배제하도록 할 예정임

## 경감세액 계산사례

<현 황>

◦ 업 종 : 음식·숙박업(현행 부가가치율은 50%임)  
 ◦ 신고현황('99년 1기 현재 간이과세자인 경우)

'98.1기	98.2기	99.1기	99.2기	00.1기	00.2기	01.1기	01.2기
2,500억원	3,000	5,000	7,000	9,000	1억원	1.2억원	1.4억원

◦ 경감기준을 : 국세청장이 전기대비 30%로 초과신고로 가정  
 ◦ 각 과세기간의 당해 업종의 1과세기간당 과표신장율 : 10%로 가정

## 계산사례

99년 1기분

◦ 경감대상 여부

3,900만원(=3,000만원×130%)을 초과하여 신고하였으므로 경감대상 사업자임

◦ 경감대상 과세표준

5,000만원(신고과표)-3,000만원×110%=1,700만원

◦ 당초 납부세액

· 간이과세자에 해당

· 5,000만원×50%(부가가치율)×10%=250만원

◦ 경감세액의 계산

· 1,700만원(경감대상 과표)×50%(음식·숙박업의 부가율)×10%=85만원

◦ 납부세액의 계산

250만원-85만원=165만원

99.2기

◦ 신고과표(7,000만원)가 전기과표(5,000만원)와 전기과표에 기당평균 과표신장율(10%)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(5,500만원)중 적은 금액(5,000만원)을 초과하므로 계속 경감규정

적용

- 경감금액은 99.1기와 동일

□ 2000.1기

- 신고과표(9,000만원)가 전기과표(7,000만원)와 전기과표에 기당 평균과표신장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(7,700만원)중 적은 금액(7,000만원)을 초과하므로 계속 경감규정 적용

- 경감금액

1,700만원(경감대상과표, 최초 성실신고금액)×50%(음식·숙박업의 부가율)×10%×50%(2년차 경감율)=42.5만원

- 납부세액

450만원(=9,000만원×50%×10%)-42.5만원=407.5만원

□ 2001.2기

- 신고과표(=1.4억)가 전기과표(=1.2억)와 전기과표에 업종별 평균과표신장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(=1.32억원)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므로 계속 경감규정 적용

- 경감세액 및 납부세액의 계산

- 당해 사업자는 2000년 1억년의 매출액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일반과세자에 해당

- 납부세액-경감세액

= (1.4억원×10%-매입액×10%) - 1,700만원×50%(부가율)×10%×20%(3년차 경감율)

16. 유흥업소등 봉사료 원천징수에 대한 구체적 계산사례

사례 1)

- 음식대 : 100만원

- 봉사료 : 30만원

- 원천징수 여부 : ○

- 봉사료(30만원)가 유흥업소 매출액(음식대)의 20%(20만원)를 초과하므로 유흥업소 사업주는 봉사료 수입금액의 5%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

- ※ 단,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에 봉사료와 음식대를 구분 기재한 경우에 한함
-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 : 15,000원
- 30만원(봉사료 수입금액)×5%(원천징수 세율)

사례 2)

- 음식대 : 100만원
- 봉사료 : 15만원
- 원천징수 여부 : ×
- 봉사료(15만원)가 유흥업소 매출액(음식대)의 20%(20만원)이하이므로 유흥업소 사업주는 봉사료 수입금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 없음

17. 경정조사 등에 의하여 추가적인 적출금액이 있는 경우 과세유형은 어떻게 바뀌게 되는가?

- 현행 부가가치세 과세제도에 의할 경우
  - 납세자가 신고에 의한 1년간의 매출금액이 4,800만원 또는 1억 5천만원이 초과하게 되는 경우, 그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(7월~12월)부터 과세유형이 변경되나
    - 예1) '96년분의 매출액이 4,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'97년 2기분부터 간이과세 적용
  - 경정조사 등에 의하여 추가로 매출액 누락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당해 경정조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계속하여 과세특례 또는 간이과세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
    - 예2) 과세특례자에 대하여 '98년 7월에 96년분에 대한 경정조사를 하여, 96년 매출액이 4,8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도 98년까지 계속 과세특례적용후 99년부터 과세유형 변경
- 따라서 현재의 재도는 성실신고자에 대해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정조사 등에 의하여 매출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
  - 동 변경금액을 기준으로 경정조사 대상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제2과세기간부터는 세액 계산에 있어서는 과세유형을 변경 적용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

예3) 예2의 경우에 있어, '97년 2기분부터는 간이과세에 의하여 세액을 부과 또는 추징

**18. 현재의 과세특례등 소규모사업자 과세제도 배제기준은 어떠한 내용이며 개정내용은?**

- 현재 소규모사업자 적용 배제기준은 2가지 종류로 운영되고 있음
- 첫번째는 최종소비자가 아닌 사업자와 주로 거래하는 경우등 업종의 특성을 감안하여 업종별로 소규모사업자 과세제도를 배제하는 것으로
  - 이는 신규사업자 뿐만 아니라 계속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기준임
    - 간이과세 배제업종 : 광업, 제조업, 도매업, 부동산매매업
    - 과세특례 배제업종 : 광업, 제조업, 도매업, 부동산매매업, 과세유흥장소, 광역시 이상 지역의 부동산 임대업
- 다른 하나는 사업지역, 업종,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신규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현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음

예) 일용잡화 소매업 과세특례 배제기준

A 지역	B 지역	C 지역	D 지역	E 지역
16.5㎡이상	33㎡이상	33㎡이상	49.5㎡이상	49.5㎡이상

※ A지역 : 종로, 광화문, 개포, 양재세무서 등

- 이번의 개정안은 신규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과세특례배제기준을 계속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하여
  - 불성실신고에 의한 소규모사업자 과세제도 적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임

**19.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증여세 과세방식으로 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? 또한, 현행 증여의제규정을 일부 보완하여 증여의제 범위를 확대하였다고 하는데 포괄주의와는 무엇이 다른가?**

- 자본거래 등을 통한 새로운 유형의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을 완전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일부의 의견이 있으나,

-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반한다는 측면, 조세행정의 재량권 확대, 조세법률주의와의 문제로 인한 위험가능성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 신중히 다루어야 할 사항임
- 완전포괄주의로 가는 대신 정부는 현행 열거주의에 의한 증여세 과세방식을 일부 보완하여
  - 현행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증여의제유형과 유사한 변칙적인 경제적 이익등의 무상이전에 대하여는 직접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  - 새로운 유형의 특수관계자간 경제적 이익 등의 무상이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증여의제 과세범위를 확대하였음
- ※ 현행 법체계에서는 법에서 정한 증여의제유형과 유사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에서 별도로 규정하여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(실권주, 신종사채 등)

<참고>

증여세 과세방식 비교

현행(열거주의)	개정안(열거주의 보완)	완전포괄주의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증여세 과세대상(법 § 2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</li> </ul> </li> </ul>	<현행유지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증여세 과세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모든 재산</li> </ul> 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증여재산의 범위(법 § 31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,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</li> </ul> </li> </ul>	<현행유지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경제적 이익을 증여재산에 추가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증여의제 과세대상(법 § 32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본질적인 증여외에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이나 권리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무상이전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경제적 이익을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추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“증여의제” 개념이 불필요함 (증여의제→증여)</li> </ul>



현행(열거주의)	개정안(열거주의 보완)	완전포괄주의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증여의제 규정</li> <li>- 열거적 규정 (법 § 33~ § 41)</li> <li>- 기타이익의 의제(법 § 42)</li> <li>· <u>법에서 열거한 증여의제와 유사한 특수관계자간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</u>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증여의제 규정</li> <li>- &lt;현행유지&gt;</li> <li>- 기타이익의 의제 (법 § 42 개정)</li> <li>· <u>법에서 열거한 증여의제와 유사한 거래는 직접 과세(신설)</u></li> <li>· <u>이외의 특수관계자간 재산이나 권리, 이익등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무상이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(보완)</u>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증여의제 규제</li> <li>- 예시적 규정 (법 § 33~ § 42)</li> <li>(증여의제→증여)</li> </ul>

20.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과세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과세대상자와 과세방법은?

- 과세방법은 현행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세 신고·납부방법을 준용하게 됨
- 즉, 대주주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내내 1%이상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(잔금청산일, 불분명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)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고
- 예정신고 기한내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5.1~5.31까지 확정신고납부하면 됨
- 보다 상세한 사항은 향후 시행령에 규정해 나갈 예정임

21. 등록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와 취득세에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의 폐지로 부동산 거래단계 및 자동차 취득단계의 세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가?

- 부동산 취득단계의 과세완화(5.8%→5%)
  - 시행시기 : 2000. 1. 1

현행	개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취득세 : 취득가액의 2%</li> <li>• 취득세분 농특세 : 0.2%</li> <li>• 등록세 : 농특세 : 0.3%</li> <li>• 등록세분 교육세 : 0.6%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취득세 : 취득가액의 2%</li> <li>• 농특세 폐지</li> <li>• 등록세 : 취득가액의 3%</li> <li>• 교육세 폐지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합계 : 취득가액의 5.8%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합계 : 취득가액의 5%</li> </ul>

- 자동차 취득단계의 과세완화(8.2%~7%)
  - 시행시기 : 1999. 1. 1

현행	개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취득세 : 취득가액의 2%</li> <li>• 취득세분 농특세 : 0.2%</li> <li>• 등록세 : 농특세 : 5%</li> <li>• 등록세분 교육세 : 1%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취득세 : 취득가액의 2%</li> <li>• 농특세 폐지</li> <li>• 등록세 : 취득가액의 5%</li> <li>• 교육세 폐지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합계 : 취득가액의 8.2%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합계 : 취득가액의 7%</li> </ul>

22. 지방소득세를 신설한다고 하는데, 지방소득세의 부과·징수절차는 어떻게 되는가?

- 현행 소득할주민세는 국세인 소득세·법인세에 덧붙여서 부과·징수되므로 납세자에게 이중의 납세부담을 지우므로,

- 이를 소득세에 통합하여 국가가 부과·징수 등의 일체의 절차를 행하되, 징수된 소득세의 100분의 10은 해당 자치단체의 세입으로 함.

- 이는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결정('98. 2)한 소득할주민세와 소득세·법인세의 통합 징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임.

※ 법인세할 주민세의 경우, 조세체계 간소화 과정에서 교육세·농특세의 지방세흡수 등에 따른 국가와 지방간의 재원조정을 위해 법인세에 통합하고, 전액 국세로 함.

◦ 현행 : 소득할주민세

- 과세표준 : 소득세·법인세액

- 세율 : 105

- 부과·징수 : 지방자치단체

◦ 개정 : 지방소득세

- 부과·징수 : 소득세에 포함되어 국가(세무서)가 부과·징수

- 귀속 : 수납기관에서 납부된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을 해당 시·군에 이체

23. 담배와 경주마권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신규과세하면, 이에대한 세부담이 커지고, 가격이 인상되는 것이 아닌가?

◦ 현행 담배소비세액에 교육세가 부가되는 바, 교육세를 폐지하고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특별소비세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세부담에는 변화가 없음.

<현 행>

460원	184원
------	------

담배소비세

교육세

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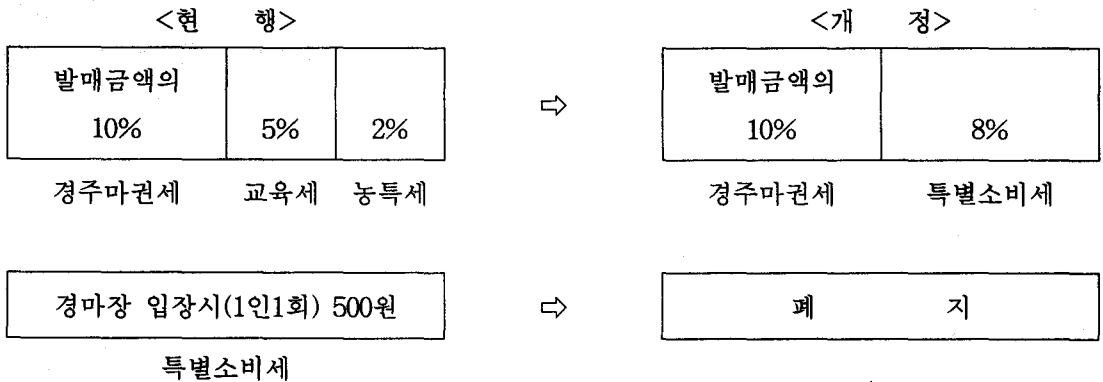
<개 정>

460원	184원
------	------

담배소비세

특별소비세

◦ 현행 경주마권세액에 대하여 교육세 50%와 농특세 20%가 부가되는 바(경주마권 발매금액의 7%), 교육세와 농특세를 폐지하고 경주마권 발매금액에 대한 8%의 특별소비세로 전환하되, 경마장 입장에 대한 특별소비세(세율 : 500원)를 폐지함.



24. 담배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시 소비자가격에 미치는 영향은?

-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유럽 등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단계세액공제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각 거래단계별 부가가치의 합계액이 최종가격이 됨
  - ※ 사업자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= 매출액×10% - 매입액×10%
-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새로이 부과할 경우 최종거래 가격의 10%(현행 부가가치세율)에 해당하는 가격의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

25. 조세감면규제법을 폐지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을 새로이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?

- 5년 단위의 한시법으로 운용되어 온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시한이 '98년말로 만료되는 것을 계기로
  - 현행 조세감면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새로운 조세지원 체계를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됨
- 특히, 조세감면규제법을 폐지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을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은 조세지출에 산제도 도입등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조세감면체계 전반을 조정하기 위한 것임
  - 첫째, 일반법률등에 분산규정되어 있는 조세감면규정을 단일 법률에 통합하고 조세특례조항 뿐만 아니라 중과세조항도 함께 규정
  - 둘째, 조세감면의 만성화·기득권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조세지원제도별로 일몰조항

설치

- 셋째, 조세감면 사전·사후 통제강화를 위해 조세감면 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 마련

**26. 일반법률에 의한 조세특례제도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?**

- 현행 조세감면제도는 조세감면규제법에서 뿐만 아니라
  - 해저자원광물개발법,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도 규정되어 있는데
  - 이번 개정안에서 조세감면사항을 「조세특례제한법」으로 이관하고 있음
- 조세특례제한법에 감면규정을 통합하여 규정하는 주요 이유는
  - 첫째, 특정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한 조세감면은 결국 국민 전체의 세부담 증가로 귀착되므로
    - 조세지원제도의 통합적·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조세지원제도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며
  - 둘째, 조세감면에 관한 사항(감면의 종류, 각종 신고서식)을 통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
  - 셋째, 조세감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내년부터 도입 추진중인 조세지출예산제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

**27. 일몰규정 도입의 필요성 및 설정기준은?**

- 이번 개정안에서 조세감면규제법의 개별 조항별로 일몰규정을 도입하려는 기본 취지는
  - 조세지원제도가 기득권화, 만성화되는 경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시적인 일몰규정을 두어 주기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조세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며
  - 아울러, 현재 추진중에 있는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것임
- 일몰기한은 원칙적으로 단기 2년, 장기 5년의 2가지 종류를 설정하였는데

- 단기 2년은 기존 개별 한시제도와 일관성을 유지하고, 조세감면제도의 효과분석을 위해서는 최소한 2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였으며
- 장기 5년은 중기 경기순환 cycle에 맞추어 조세지원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설정하였음
- \* 그리고 예외적으로 1년 또는 특정기한으로 설정하였는데, 이는 현행 규정상 '99년말 시한완료되는 조세지원과 적용기한의 설정이 부적절한 조세지원이 있음을 고려하였기 때문임
- 구체적인 일몰기한 설정기준으로는
  - 현행규정상 '99년말에 적용시한이 종료하는 지원제도는 1년의 적용시한을 두고
  - 특정업종에 대한 지원제도중 형평성 시비가 제기되는 분야 및 경제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한 지원제도등에 대해서는 2년의 적용시한을 두며
  -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장기적 지원이 필요한 제도 및 지원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제도등에 대해서는 5년의 적용시한을 둘 예정임
  - 이밖에 외환위기 해소에 필요한 조세지원제도 및 적용시한을 두는 것이 부적절한 조세지원제도는 일몰규정 예외인정도 허용할 방침임

28. 조세감면에 대한 사전·사후관리 강화의 구체적 실행방법은?

- 그동안 각부처로부터의 조세감면 요구는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조세감면으로 인한 효과 분석등은 전무하여
  - 감면이 신설된 후에는 기득권화·장기화되는 경향을 보였고
  - 이에 따라 세입기반이 많이 잠식되었음
-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전관리 강화를 위하여
  - 재경부는 연초 각 부처에 조세지원 기본계획을 통보하고
  - 각 부처는 재경부에 건의목적, 기대효과, 예상 세수효과 등 분석자료가 첨부된 조세감면건의서를 매년 5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으며
  - 재경부는 건의사항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하

도록 규정하였음

•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는

- 신규 조세지원제도, 시한이 만료되는 조세지원제도를 대상으로 주무부처는 조세지원효과, 자체평가의견 등을 적시한 조세감면평가보고서를 재경부에 제출하도록 하였고
-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재경부내에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「조세감면평가위원회」를 설치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음

### 29.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시기 및 준비상황은?

-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원의 내역과 규모를 예산형식으로 표현하여 주기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조세지원의 관리·통제를 용이하게 해주는 제도임
-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방만한 조세지원을 체계적으로 관리·통제하여 복잡해진 세제를 단순화하는 장점등을 가지고 있는 반면, 농·어업 등 특정분야에 있어서 교역 상대국과의 통상마찰을 야기할 우려 등의 문제점도 예상되므로
  - 실제 도입은 이와같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함께 신중히 추진할 예정임
- 따라서 올해는 제도도입을 위한 사전준비에 주력할 예정인 바
  - 먼저, 주요 선진국의 제도도입 및 운용 실태를 조사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조세지출의 개념을 정립하고
  - 이를 위해 정확한 감면통계의 확보, 조세감면규모 추계방법 개선 등을 강구하며
  -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하여 개별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일몰 조항 설치 및 사전·사후평가 의무화제도 도입등 조세지출 예산제도 도입에 필요한 제도적장치를 마련할 예정임

### 30. 이번 법인세법개정의 기본방향은?

- 현행 법인세법은 지난 67년 전문개정 이후 30년간 잦은 부분개정으로 인하여 관련규정이 법령·통칙등에 걸쳐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간 학계·기업등으로부터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

- 따라서, 금년 법인세법개정은 세제를 간소화·명확화하여 납세자에게 쉽고 편리한 제도를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전문개정을 통해 법인세법을 체계적으로 재편하기로 하였음
- 특히, 미진한 부문이었던 합병이나 상법에서 새로이 도입되는 분할등 조직변경에 대한 과세 및 지원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한편
- 국제기준에 따라 각종 경비의 손비처리원칙 및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, 특수관계자와의 변칙·부당거래를 통한 기업자금 유출을 억제하여 경비지출의 적정성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동시에
- 감가상각등 복잡한 각종 과세제도와 신고·납부절차등을 대폭 단순화하여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과세협력비용을 최소화하여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음

### 31. 준비금 및 충당금제도는 어떻게 바뀌나?

- 준비금 및 충당금제도는 당해 사업연도에 실제 비용이 발생되지는 않았지만
  - 장래에 발생할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금등을 적립하는 경우 이를 손비로 인정하는 제도임
- 이와같은 준비금 및 충당금제도는 과세소득의 조절이 가능하여 대부분의 외국에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
- 따라서, 손해배상준비금제도와 같이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제도는 폐지하고
  - 퇴직급여충당금제도는 금년부터 퇴직보험제도가 새로이 도입되는 등 사외적립제도가 확충된 점을 감안하여 단순한 사내 유보자금에 불과한 충당금의 한도를 축소하게 된 것임
    - \* 전원퇴직시 퇴직금 추계액의 50%→40%
- 다만, 대손충당금제도는 최근 기업들의 부도 증가에 따라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
  - 일반기업들도 실제 대손이 발생한 실적율내에서는 전액 손비로 인정하고
  - 특히, 금융기관의 경우 감독 규정에서 자산 건전성분류에 의한 표준비율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



- 그간 은행에 대해서만 허용하던 표준비율에 의한 적립특례를 1년간 한시적으로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였음

### 32. 공공법인제도가 폐지된다는 데 그 내용은?

- 지난 해까지는 공사·공단등 공공법인에 대해
  - 법인세율적용에 있어 특례(16.25% : 일반기업은 16.28%)를 허용하였음
- 그러나,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공공법인에 대한 특례세율을 폐지함에 따라 일반법인과 구분하여 운용할 세제상 실익이 없어졌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세제를 간소화하기로 하였음
- 한편, 금년부터 접대비한도 적용에 있어 공공법인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감안하여 일반 기업의 70%만 인정하고 있으나
  - 공공법인제도의 폐지에 따라 앞으로는 그 대상을
    - 정부투자기관 및 출자기관과
    - 그 투자·출자기관이 다시 출자한 회사중 투자·출자기관이 제1대 주주인 출자회사로 조정하여
  - 이들 공공기관의 출선수범을 유도하도록 하였음
- 이와함께 그간 단위 농·수·축협등 조합법인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없이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허용하였으나
  - 접대비등 각종 경비의 손비인정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등 일반기업과 비교해 과세불형평 문제가 있어 폐지하기로 하였음

### 33. 감가상각제도는 어떻게 바뀌나?

- 지난 94년 감가상각제도를 전면개편하면서
  - 세수문제등을 감안하여 개정규정은 95. 1. 1이후 취득자산에 대하여만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
  - \* 94. 12이전 취득자산은 종전규정 적용

- 기업들이 94. 12이전에 취득한 자산과 95. 1. 1이후 취득하는 자산을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게 되어 계산이 복잡하고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어 왔음
- 감가상각방법의 경우 유형고정자산을 예로 들면
  - 94년이전 취득자산은 정액법·정율법중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나
  - 95년이후 취득자산은 건축물은 정액법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음
- 내용연수의 적용에 있어서도
  - 94년이전 취득 자산은 개별 자산별(591개)로 법정화된 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
  - 95년이후 취득 자산은 자산별·업종별 8개로 그룹핑하여 기준 내용연수의 25%(지방국세청장 승인시 50%) 범위내에서 기업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음
- 따라서, 자산의 취득시기에 따라 각각 달리 적용되는 감가상각비 계산방법을
  - 가급적 '95년이후 취득자산의 방법으로 통일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였으며,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 발표할 예정임

34. 신고·납부상의 절차규정도 많이 간소화된다는데 그 내용은?

- 먼저, 법인세의 신고·납부기한은
  - 결산확정일(사업연도종료일부터 60일내)을 기준으로 하여
  - 일반법인은 15일내로 되어 있고
  -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법인은 30일내로 되어 있음
- 이와같이 결산 확정일 및 외부조정여부에 따라 신고납부기한이 달라지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하여
  - 모든 법인에 대하여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월내로 통일하였음
- 또한, 현재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
  - 앞으로는 세액이 1,000원미만인 경우 이를 원천징수하지 않도록 하였으며

- 상시고용인원이 10인이하인 법인등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소규모 법인의 경우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허용하였음

35. 규제제도의 개선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가?

- 먼저, 대차대조표의 일간신문 의무공고제도의 적용대상을 외부 감사대상법인(자산 70억원 이상)으로 축소하였는 바,
  - 동제도는 상법에서 공고를 의무화하고 있고, 그 취지도 이해관계자에게 공표한다는 의미이므로
  - 모든 법인에 대해 세법에서 이를 강제하고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측면에서 중소기업수준의 기업들은 대상에서 제외된 것임
-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도
  - 잉여금을 배당하는 기업과 배당하지 않는 기업간 과세형평을 위해 배당이 불가피한 상장기업을 제외한 대규모 기업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제도이나
  - 협회등록법인도 상장법인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이를 제외하였음
- 특히, 비업무용 부동산제도는 그간 인위적이고 복잡한 판정기준으로 인하여 많은 불편을 야기해 온 점을 감안하여
  - 세부판정기준을 완전 폐지하고
  - 다른 업무무관자산과 동일하게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인지의 여부에 따라서만 판정하도록 하였음
- 그밖에 2000년부터 과다차입금(자기자본 5배초과)에 대한 지급이자 손비부인제도가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
  - 현행 차입금과다법인에 대한 임야등의 취득제한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여 99년까지 1년간만 적용하도록 하였음

36. 거주자의 해외자산 양도소득에도 과세를 한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?

◦ 국내 양도세 과세자산에 준하여 과세

과세대상	대상자산	세율	비고
◦ 외국소재부동산	토지·건물	20~40%	등기여부에 관계없이 과세
◦ 해외부동산상의 권리	지상권, 전세권, 부동산임차권,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		
◦ 해외유가증권	주식·출자증권	20%	국외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경우도 과세

◦ 양도차익 및 산출세액의 계산

- 국내자산 양도소득계산을 준용하되, 실질거래가액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, 외국납부세액은 공제하도록 함

37. 기술이전소득의 감면율을 조정하는 이유는?

◦ 특허권·실용신안권 또는 기술비법을 양도·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

- 그 이전대상에 따라 차등하여 법인세·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는 바

※ 내국기업에게 양도·대여시 : 전액 면제

외국기업에게 양도·대여시 : 50%세액 감면

- 일부에서는 기술국수주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

◦ 이번 개정안에서는

- 내국기업에게 기술이전할 경우에도 외국기업과 동일하게 기술이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50%의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음

◦ 참고로 기술이전소득에 대하여 일본(외국기업에게 이전시에 한해 40% 소득공제)을 제외하고는 조세감면을 허용하는 사례가 없음

38. 세무사 직무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이유 및 여타 자격사와의 충돌가능성은?

- 우선 세무사의 직무범위에 개별공시지가의 행정심판대리권을 추가하는 것은
  - 공시지가가 소득세·상속세 등 대부분의 토지관련 세금의 과세표준산정에 근거가 되는 사항으로 납세자의 조세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
  - 현재도 세무사가 개발부담금 및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의 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것임
- 그리고 세무신고서류의 확인 및 증명업무를 추가하는 것은
  - 세무사는 기장대리 및 기장에 의한 세무신고를 대행하므로 당해 기업의 재무구조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
  - 당해 세무서류를 직접기장하고 신고대리를 한 세무사에게 세무관련 서류의 확인 및 증명업무를 허용하는 것이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임
- 상기 2가지 추가되는 직무는 사실상 세무대리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업무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
  - 여타 자격사의 업무범위와 상충되는 것은 아님

주택회보